

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「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2월 27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2. 발 의 자 : 박성규 의원 외8

3. 제정이유

-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두고, 자문사항·위촉 절차·임기·해촉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 및 위촉에 관한 사항(제2조)
-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의 자문사항(제3조)
- 자문요청 절차에 관한 사항(제4조)
- 입법 및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제5조)
- 해촉 사유를 규정함(제6조)
- 수당 지급 및 소송비용 준용에 관한 사항(제7조)
- 자문처리실적부 비치에 관한 사항(제8조)

5. 관련법령 :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6. 2. 27. ~ 2026. 3. 6.(초일불산입 5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사운영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1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 · 전화 · 팩스 · 직접방문 등

8. 기타

○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(전화: 061-550-591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완도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촉) ① 완도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합하여 2명 이내로 둔다.

② 고문은 변호사, 법률학 교수,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완도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③ 고문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완도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.

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3조(자문사항)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자치법규의 제·개정·폐지 등에 관한 사항
2. 의회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
3.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·처리, 그 밖에 의회 관련 사항
4.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
2.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 쟁송 관련 사항
3. 의안 심의 관련 법률사항

4.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

제4조(자문요청 등)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촉기간)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6조(해촉)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
2.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
3.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
4.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
5.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
6.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위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7.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7조(수당 등)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.

③ 법률고문이 의회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「완도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8조(자문처리실적부 비치)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승낙서

성명:

생년월일:

주소:

연락처:

본인은 「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에 따른
완도군의회 입법고문(법률고문) 위촉을 승낙하며, 완도군 고문
변호사를 겸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위 축 장

성 명:

생년월일:

주 소:

귀하를 「완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」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완도군의회 입법고문(법률고문)으로 위촉합니다.

○ 위촉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(2년)

년 월 일

완도군의회 의장 직인

[별지 제3호 서식]

자문처리 실적부

관리번호: 20〇〇 -		
안건명:		
자문사항		
연월일	의뢰인	자문내용
처리결과		
연월일	고문인	처리내용